

2025년 찾아가는 1:1 맞춤형 경영컨설팅 모집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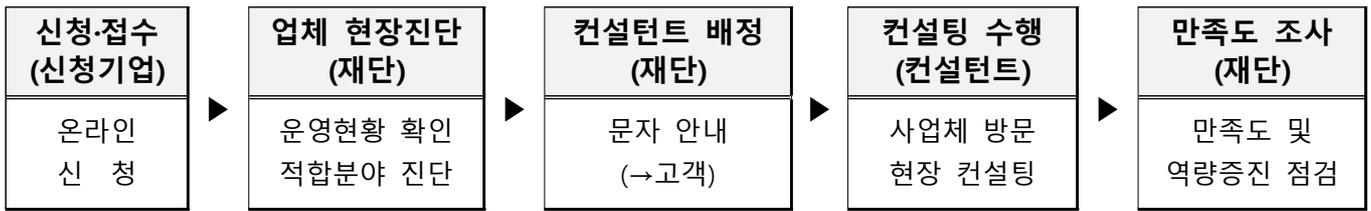
충남신용보증재단은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충청남도 소재 업체 및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에 대해 전문가의 1:1 맞춤형 경영컨설팅을 통해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신청기업을 모집하오니 충청남도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지원내용

- (지원대상) 충청남도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 (지원제외) 휴폐업 기업 및 재보증제한업종 영위 기업 ([별첨] 참고)
- (지원규모) 670회(업체당 최대 8회 지원-지원 횟수는 진단을 통해 확정)
- (비용지원) 컨설팅 비용 전액 지원(자부담 없음)
- (지원내용) 업체 현장진단을 통해 적합 컨설팅 분야를 선정 후 분야별 컨설턴트가 신청기업(예비창업자) 대면 컨설팅 진행하여 1:1 집중 지도
- (지원분야)

분 야	대 상	지 원 내 용
① 창업컨설팅	예비창업자, 초기창업기업 (2024~2025년 창업기업)	◦ 입지 분석, 예상매출 계산 및 손익 분석, 사업아이템 고도화 등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궁금증 해소 ☞ 충남신용보증재단 “창업아카데미” 교육을 먼저 이수한 후 신청 가능(월 1회 온·오프라인 진행) ☞ 창업아카데미와 창업컨설팅 이수 시 신용보증 우대
② 역량강화 컨설팅	기존 사업자	◦ (경영) 마케팅, 세무, 노무, 프랜차이즈 분야 애로사항 해소 (멘토) 업종별 현업 멘토에게 사업운영 노하우 습득 - (업종) 학원, 전자상거래, 체육도장, 음식점, 카페 등
③ 네이버 플레이스	기존 사업자	◦ 네이버 플레이스 개설 및 고도화, 예약 및 광고 기능 세팅 등 기초부터 중급 수준까지 관리 지원

2. 지원절차



3. 모집기간 및 신청방법

- (모집기간) 2025. 1. 15 ~ 상시 접수 (예산 소진 시 마감)
- (신청방법) 재단 홈페이지 내 「경영지도」-「컨설팅」에서 신청

신청 홈페이지(URL)	QR코드
https://www.cnsinbo.co.kr/reservation/detail.do?code=01&m=1002&s=cnsinbo	

- (온라인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기존 사업자만 해당)

4.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자영업자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컨설팅 완료를 조건으로 별도의 현금성 지원금 등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창업아카데미 교육 및 창업컨설팅 이수 시 신용보증을 우대하여 지원하며, 신용보증 지원 가능 여부 및 금액은 심사 후 확정되며, 컨설팅 및 교육 이수에도 불구하고 보증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컨설팅 신청 후 재단 직원의 업체 현장 진단 결과에 따라 컨설팅 분야 및 기간이 확정됩니다.
- 신청정보 오기재, 연락 불능 및 공고문 미숙지 등으로 인한 신청기업의 불이익은 재단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5. 문의처

- 충남신용보증재단 창업성장지원부 정찬영 계장 (☎ 041-530-3886)

2025. 1. 15



재보증제한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561 중	(삭제 2010.11.30)
5621	(삭제 2010.11.30)
56211	일반유흥 주점업 (신설 2010.11.30)
56212	무도유흥 주점업 (신설 2010.11.30)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은 제외 (개정 2010.11.30)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46102 중	담배중개업(2009.1.1)
46107 중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개정 2004.11.11)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단, 주류중개업면허(나) 또는 특정주류도매업면허를 취득한 경우 제외 (단서신설 2010.8.31)(개정 2018.8.21)
46333	담배 도매업
46416 및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단서신설 2005.7.4)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신설 2009.1.1)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제5호 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신설 2009.1.1)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 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 회장이 지정한 업종(신설 2010.11.30)